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 기관 일원화 >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17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 기관 일원화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4.

3. 회부연월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감독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

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 기관 일원화

개정안은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의 급식관리를 지원받는 경우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급식관리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제4조는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되,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은 제외하고 있음.

또한, 「학교급식법」 제7조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유치원 포함)는 해당 자격을 갖춘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면서,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경우 그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는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원아 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20. 12. 29. 개정, 2021. 12. 30. 시행)에서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으로 영양사¹⁾가 없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위생 및 영양

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정의)에 따라 학교는 집단급식소에 해당함.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사립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유치원 급식관리 관련 규정】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 5. (생략)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u>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개정 2009. 2. 6., 2020. 1. 29.> ② (생략) ③ <u>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u>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u>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u> <신설 2021. 12. 28.>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8.>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u>사립유치원</u>(이하 “사립유치원”이라 한다) <u>중 원아 수</u>(「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u>가 50명 미만인 유치원</u>을 말한다.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u>국립·공립유치원</u>(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u>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u>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u>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u>(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u>1명 이상 교사로 두어</u>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u>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	--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개정 2022. 6. 28.>

③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호 및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8.>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는 제3항의 유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신설 2022. 6. 28.>

1.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
 2. 위생·안전관리
 3. 식생활 지도 및 영양 상담
 4. 그 밖에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수, 유치원 간의 이동 거리, 유치원별 원아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황의 합계를 말한다) 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원아수(현원) 별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현황】

구분	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200명 이상
근거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전담인력	영양사 배치의무 해당없음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지원 가능	2개원 이내 공동 영양교사 배치 가능	
			영양교사 1명 배치 원칙	
적용기준	시설 · 설비기준	시설 · 설비기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 · 안전관리기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의무등록	의무등록 ※ 영양사 둔 경우 예외		

주: 국립·공립유치원은 원아 수에 관계없이 학교급식 대상으로 영양교사 1명 이상 배치
자료: 교육부

구체적으로 「학교급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유치원의 급식관리 지원 및 지도·감독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어,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급식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무상급식비 등 예산 지원, 위생·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²⁾,

특히,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생·안전점검(연 2회) 및 운영평가(연 1회)를 실시하고, 점검 후 현장지도 및 미개선 사항에

2)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현황 > (자료: 교육부)

(무상급식) 17개 시도에서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위생·안전지원) 유치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실시, 노후급식 기구 교체 지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지원, 유치원 급식 종사자 대상자 위생교육 및 위생교육 동영상 제작, 유기관기관 연계 식중독 컨설팅 실시, 급식 위생 꾸러미 지원
(영양·식생활교육) 표준레시피 개발, 유치원 영양·식생활 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대한 시정 조치 등과 더불어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예산지원, 각종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관할하는 유치원의 급식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지원)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지원】

구분	교육(지원)청 영양교사의 급식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지원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지원대상	■ 원아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 원아수 100명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 50명 미만 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등
운영주체	■ 교육감	■ 시장·군수·구청장
운영방식	■ 직접운영	■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운영위탁
전담직원	■ 영양교사	■ 영양사, 위생업무담당자
지원업무	■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 식단제공, 표준레시피 제공, 영양관리 지원 등 ■ (위생·안전관리) 위생교육 자료 개발·지원 및 방문교육 지원, 위생안전관리 전반 컨설팅 등 지도 등 ■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식생활 교육, 가정통신문 제공, 방문 영양상담 및 자료 제공 등	■ (영양사) 식단 작성,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 (위생업무 담당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916개소('24. 4월 기준)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30.4%에 해당하며,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41명('24. 2월 기준)으로 영양교사 1인이 담당하는 사립유치원 수는 평균 22개소로 추정됨.

【급식 원아수(현원) 별 유치원 규모 현황】

(단위: 개소, 2024년 4월 정보공시 기준)

구분	국립	공립		사립		합계
		단설	병설	법인	사인	
50명 미만	1	13	3,790	88	407	4,299
50~99명	1	235	303	163	753	1,455
100~199명	1	272	20	166	1,053	1,512
200~299명	0	54	0	26	281	361
300명 이상	0	7	0	2	71	80
계	3	581	4,113	445	2,565	7,707

자료: 교육부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배치 현황】

(단위: 명, 2024년 2월 기준)

교육청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계
정원 ³⁾		6	-		-	-		3	1	10
정원외 등	5	-	4	1	6	5	7	3	-	31
계	5	6	4	1	6	5	7	6	1	41

자료: 교육부

따라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 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4. 2. 2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2,621				
교사 계	2,601			일반직 계	20
중등순회교사	47	특수교육순회교사	1,7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18
전문상담순회교사	828	영양교사	10	고위공무원단	2

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급식소로 의무등록을 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으면서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도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의 급식지원을 받게 되어 중복적으로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의 급식관리를 지원받는 경우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관리의 권한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중복 지도·감독에 따른 운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7조제3항의 규정 사항은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서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영양교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둘 수 있도록 하여(2021. 12. 28. 신설, 2022. 6. 29. 시행)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의 적용을 받은 지 2년여가 지난 상황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 효과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에 따르면, '21.1월부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었고, '22.6월부터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재까지 「학교급식법」 적용 등 안착 지원과 유치원의 급식 운영·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3년에는 유치원·학교급식 추진정책 및 제도개선, 현장 지원사업 등 급식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정책의 성과를 측정한 바 있음.⁴⁾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 현장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정책개선 및 현장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급식 정책모니터단('22년~)과 유치원 급식 현장소통단('23년~)을 운영하고, 유치원 맞춤형 급식운영·위생 교육자료, 영양·식생활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함.

4) < 유치원·학교급식 추진정책 및 제도개선, 현장 지원사업 등 급식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 (자료: 교육부)

(조사표본) 총 683명 참여(유·초·중·고 영양(교)사 366명, 교육(지원)청 209명, 학부모 68명, 원장·원감 35명, 전문가 5명)
(설문내용) ①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만족도/ ② 유치원·학교 지원정책(식단·위생·교육자료 개발) 만족도/ ③국민 소통정책 만족도 / ④ 유치원 급식 서식 간소화 만족도
(관련결과)
- 자료개발 현장지원 사업: 매우 도움됨 61.3%>도움됨 30.5%>보통 6.3%
- 유치원급식 현장소통단 및 정책모니터단 사업 필요성: 보통 90.7%>필요30.6%>매우필요 28.7%
- 유치원급식 서식 통합 및 간소화 지원사업 : 매우만족 38%>만족 27%>보통 22%

아울러, 현행법 제7조제3항은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9개 교육(지원)청에만 영양교사('24. 2월 기준, 41명)가 배치되었으며, 이에 사립유치원이 속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영양교사 배치 여부에 따라 급식관리 여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가 배치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관할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게 되나, 동일 규모의 그 외 사립유치원은 현재와 같이 교육(지원)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감독 대상이 되어 관리체계의 혼동과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교육부는 「학교급식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중복관리 함에 따라 현장의 혼선 및 부담이 발생하나,

이러한 문제는 시·도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협의로 유치원 지원 및 점검 내용, 횟수 등을 조정하여 중복을 해소할 수 있고, 영양교사가 실제 상주하지 않음에도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관리주체를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는 개정 취지와 다르게 해

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영양교사 정원은 10명으로 3년째('23~'25) 동결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급식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행안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배치를 우선 확대한 후 법 개정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의무적으로 센터에 등록하여 급식관리 지원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100인 미만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센터에 의무 등록하여 지원받고 있는 현행 체계를 고려할 때, 유치원 지원 횟수 등을 교육청과 협의 운영하면서 중복을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유치원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지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의 인력배치 규모 및 담당 시설수, 지원 수준 등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236개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영양사, 위생업무 담당)을 두어, '100인 미만의 모든 사립유치원' 1,315개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①순회방문지도(정기적인 영양사 방문을 통한 개인위생, 조리·배식관리, 염도관리 등) ②연령별·급식소별 맞춤형 식단제공 ③가정통신문(올바른 식생활 정보 등) 제공 ④어린이·조리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으로 급식 안전·영양관리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음.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가 있고, 유보통합 시행 이후 적합한 급식지원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⁶⁾과 개정에 앞서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는 영양교사를 교육지원청에 의무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⁷⁾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

6)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제주

7) 강원, 충남, 경북